



제426회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 강화 등〉

■ 서미화·용혜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350호)

2025. 7.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조 문 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1
III . 주요내용	2
IV . 검토의견	3
1. 장애인인 피고용인에게 투표시간 청구 가능 안내 의무화 등	3
2. 금치산자제도 폐지에 따른 선거권 제한규정의 정비	9
3. 발달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선거공보 및 선거공약서 작성 등	13
4. 교통약자의 투표소 및 사전투표소 접근 편의성 보장	25
5. 투표용지에 소속정당을 상징하는 마크·심벌 및 후보자 사진 게재 등	30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서미화의원·용혜인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3. 25.
3. 회 부 일 : 2025. 3. 26.

II. 제안이유

현행법은 장애가 있는 선거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점자형 선거공보의 작성, 투표소 접근 편의, 특수투표용지 또는 투표보조용구의 제작·사용, 투표소에서의 가족 등의 투표 보조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대부분의 규정은 대체로 시각장애인 등 신체의 장애를 가진 선거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발달장애인 등 정신적 장애를 가진 선거인의 참정권은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체의 장애 뿐 아니라 발달장애 등 정신적 장애를 가진 선거인을 모두 포함하여 실질적으로 참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Ⅲ. 주요내용

가.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 중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장애의 유형·정도 및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본인에게 직접 알리거나 근로지원인 등 고용된 사람의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사람을 통하여 알리도록 함(안 제6조의2제3항 단서 신설).

나. 후보자는 발달장애인용 선거공보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선거·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후보자는 의무적으로 이를 작성·제출하도록 함(안 제65조제4항).

다.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와 그 소속정당을 식별하기 어려운 선거인의 투표를 보조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보자의 사진 또는 정당마크가 표시된 투표보조용구를 의무적으로 제작·사용하도록 함(안 제151조제9항 신설 등).

IV. 검토의견

개정안은 장애인의 선거권 보장을 보다 강화하고, 실질적인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고용주가 장애인 근로자에게 투표시간 청구 가능 안내를 의무화하고, 발달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선거공보 및 선거공약서 작성을 하도록 하며,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투표소 접근 편의 보장을 강화하는 한편, 금치산자제도 폐지에 따른 선거권 제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1. 장애인인 피고용인에게 투표시간 청구 가능 안내 의무화 등

개정안은 고용주가 피고용인 중 장애선거인에 대해 장애의 유형·정도 및 특성을 고려하여, 본인에게 직접 또는 근로지원인¹⁾ 등을 통해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도록 추가적인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용인에게 투표시간 청구 가능 안내를 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6조의2(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 ①·② (생략) ③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제6조의2(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단서 신설>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① · 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략) <신설> 2. (생략) 3. 제65조제4항 단서를 위반하여 <u>점자형 선거공보</u>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 3의2. ~ 5. (생략) ④ ~ ⑫ (생략)	----- -----다만, 고용된 사람 중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u>장애의 유형·정도 및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본인에게 직접 알리거나 근로지원인 등 고용된 사람의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사람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u>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현행과 같음) <u>1의2. 제6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u> 2. (현행과 같음) 3. ----- ---<u>점자형 선거공보 및 발달장애인용 선거공보</u>----- 3의2. ~ 5. (현행과 같음) ④ ~ ⑫ (현행과 같음)
---	---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¹⁾이 운영을 하고 있으며, 업무에 필요한 핵심 업무 수행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 장애인 근로자가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임.

현행법은 피고용인의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법 제6조의2제1항), 이에 따라 고용주는 피고용인이 투표 하기에 필요한 시간을 의무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하며(법 제6조의2제2항),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법 제261 조제3항제1호).

또한, 고용주는 피고용인의 참정권 보장 및 고용관계 내의 권리행사에 대한 정보 접근성 제고 등을 위해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홈페이지,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피고용인이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있음(법 제6조의2제3항).

그런데, 피고용인이 장애선거인인 경우 고용주가 인터넷 홈페이지나 사보 등을 통해 비장애인과 같이 일률적으로 관련 정보를 공지하는 방식으로는 장애의 유형이나 정도에 따라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장애인의 특성과 정보 접근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보다 개별적이고 맞춤형으로 관련 정보를 안내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피고용인이 장애로 인하여 고용주가 알리는 투표시간 보장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정보습득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고용주가

피고용인에게 직접 또는 근로지원인 등을 통해 이를 알리도록 함으로써, 장애로 인하여 선거관련 정보습득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선거인의 실질적 참정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그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불이익처분” 측면에서 개정안은 고용주가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용인에게 투표시간 청구 가능 사실을 안내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를 신설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적절성과 해당 금액의 적정성에 대해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현행법에서 고용주로 하여금 투표시간 청구 가능 사실을 피고용인에게 안내하도록 의무를 부여한 것은, 피고용인의 투표시간 보장²⁾을 위한 절차적 수단을 규정한 것에 불과한바, 안내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도 위반행위의 고의·과실 여부 등을 구분하지 않고,³⁾ 고용주에 일률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피고용인의 실질적인 선거권 침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주에게 과도한 행정 책임을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음.

2) 「공직선거법」

제6조의2(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

② 고용주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여 주어야 한다.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고의 또는 과실)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또한, “투표시간 청구 가능 고지의무” 위반이 실제 투표권의 침해로 직결되는 정도와 “투표시간 보장 불이행”⁴⁾의 위반행위가 갖는 침해의 정도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할 수 있는바, 양자의 행위에 대해 동일한 과태료 상한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둘째, 고용주가 장애선거인에게 투표시간 청구 관련 정보를 직접 전달하거나 근로지원인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안내한 경우, 객관적 증빙자료 확보가 곤란하여 과태료 부과 시 입증책임의 소재가 불명확해질 수 있는바,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장애선거인에 대한 투표시간 청구 관련 정보의 고지방법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한편, 대표발의 의원실에 확인한 결과, 개정안의 취지는 장애인에 대한 안내의무 위반 시에만 고용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인바, 이럴 경우 안 제261조제3항제1호의2 중 “제6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를 “제6조의2제3항단서를 위반하여”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4) 「공직선거법」

제6조의2(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 ①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고용주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여 주어야 한다.
③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투표시간을 보장하여 주지 아니한 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하여 피고용인이 장애인인 경우의 고지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할지 여부는 국회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률 조항은 명확성의 요건이 더욱 엄격해야 하는 점을 감안할 때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2. 금치산자제도 폐지에 따른 선거권 제한규정의 정비

개정안은 선거권이 없는 자의 범위에서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를 삭제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①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1.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2. ~ 4. (생략) ②·③ (생략)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①----- ----- -----. <삭제> 2. ~ 4.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시행되었음.

한편, 「민법」 개정시(2011.3.7.) 부칙 제2조에서 이 법 시행 당시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에 대하여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이 개시되거나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된 경우 또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한 때(2018.6.30.)에는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는 무효가 되도록 규정하였음.⁵⁾

5) 「민법」 <법률 제10429호, 2011.3.7.>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

이로 인해 2018. 7. 1.부터는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면서 법적으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는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나, 이후 「공직선거법」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는 별도로 개정이 되지 않아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금치산자는 물론 피성년후견인에 대해서도 선거권을 인정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민법 개정 이후 이루어진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선거권 보장을 법률에 명확히 반영하려는 것으로, 금치산자는 심신상실 상태로 법률상 무능력자를 뜻했던 것에 비해 성년후견인 제도는 금치산자 제도가 대상자를 행위능력이 전혀 없다고 판단하는 것과 달리 대상자의 행위능력을 최대한 존중하고자 하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인 만큼, 피성년후견인의 선거권을 보장하려는 그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피성년후견인 중 종전의 금치산자와 같이 선거권 행사가 어려운 사람도 있으므로 해당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선거권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행위능력 등을 고려할 때 선거권 행사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국민의 참정권을 박탈하는 것이 적절한 입법인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이 개시되거나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된 경우 또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는 장래를 향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금치산자와 피성년후견인의 비교》

구 분	금치산자	피성년후견인
정 의	· 심신상실의 상태(常態)에 있는 사람으로서 금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	·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으로서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
용 어	· 금치산이라는 부정적 용어 사용	· 부정적 용어 폐지
대 상	· 중증 정신질환자에 국한	· 치매노인 등 고령자까지 확대
보호범위	· 재산행위	· 의료, 요양 등 복리영역까지 확대
독 자 적 행 위 권	· 독자적인 법률행위 불가	· 일용품 구입 등 일상 행위 가능
공 시	· 제한 없는 공시(가족관계등록부)	· 이해관계 있는 자의 법원기록 조회로 제한적 공시 ·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

한편, 재외선거인명부의 작성 시 현행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금치산자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재외선거인명부의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해당 정보를 전산조직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금치산자제도가 폐지된 만큼 현행법 제218조의8(재외선거인명부의 작성)제4항제3호⁶⁾도 함께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임.

6) 「공직선거법」

제218조의8(재외선거인명부의 작성) ① ~ 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선거일 전 150일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재외선거인명부의 작성 및 해당 선거 직전에 실시한 대통령선거 또는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확정된 재외선거인명부의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정보를 전산조직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에 관한 정보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정보
3. **제1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금치산자에 관한 정보.**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정보를 관리하는 구·시·읍·면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제1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에 관한 정보

참고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개정안과 같이 금치산자를 단순 삭제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며 같은 내용의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2014.10.8.)한 바 있음.

3. 발달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선거공보 및 선거공약서 작성 등

개정안은 후보자로 하여금 기존의 점자형 선거공보 외에 발달장애선거인을 위한 별도의 선거공보 및 선거공약서를 추가로 작성하고, 선거공보에 한하여 대통령선거·지역구국회의원선거·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후보자에 대해서는 발달장애인용 선거공보의 작성·제출을 의무화하는 한편, 이를 위반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장애인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현행과 개정안의 비교 》⁷⁾

선거공보	현행	개정안
작성 및 제출	점자형 선거공보	발달장애인용 선거공보도 포함
인쇄물 접근성 바코트 방식	음성·점자 출력 바코드로 점자형 선거공보 대체 가능	발달장애인을 위한 쉬운 설명 영상 출력 바코드로도 대체 가능
관련 행정조치	시각장애인 대상 주소 조사 및 통보	발달장애인까지 포함하여 조사·통보 의무 확대
명칭 및 포함 범위	점자형 선거공보 포함	발달장애인용 선거공보 포함
벌칙	(신 설)	대통령·지역구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시 발달장애인용 선거공보 미 제출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선거공약서	현행	개정안
작성 및 제출	점자형 선거공약서	발달장애인용 선거공약서 포함

7) 개정안의 신규대비표는 참고자료 참조

현행법⁸⁾에 따르면 후보자는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면서, 대통령선거·지역구국회의원선거·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는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제출을 의무화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한편,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별도의 선거공보 및 선거공약서의 작성·제출은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점자형 선거공약서에 한하여 후보자가 이를 작성하는 경우 그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⁹⁾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시각장애선거인과 다르게 발달장애선거인을 위하여는 별도로 후보자 선거공보 및 선거공약서 등을 작성하지 않고 있어 발달장애선거인의 후보자에 대한 선거정보 획득이 원활하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¹⁰⁾

8) 「공직선거법」

제65조(선거공보) ④후보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거공보 외에 시각장애선거인(선거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시각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위한 선거공보(이하 “점자형 선거공보”라 한다) 1종을 제2항에 따른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의 두 배 이내에서 작성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선거·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되,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9)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보자를 위하여 부담한다. 이 경우 제3호의2 및 제5호의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2. 제65조에 따른 점자형 선거공보(같은 조 제11항에 따라 후보자가 제출하는 저장매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작성비용과 책자형 선거공보(점자형 선거공보 및 같은 조 제9항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포함한다) 및 전단형 선거공보의 발송비용과 우편요금

3. 제66조(선거공약서)제8항의 규정에 따른 점자형 선거공약서의 작성비용

이에 개정안은 후보자로 하여금 발달장애선거인을 위한 별도의 후보자 선거공보 및 선거공약서 등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여, 발달장애선거인의 알 권리와 실질적 참정권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 개정안의 상세 내용 - 선거공보 관련(제65조) 》

구 분	현 행	개 정 안
발달장애인용 선거공보 작성 §65④	후보자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 (임의)	후보자 점자형· <u>발달장애인용</u> 선거공보 작성(임의)
	대통령·지역구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제출(의무)	대통령·지역구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점자형· <u>발달장애인</u> 선거공보 작성·제출(의무)
	음성·점자 형태의 인쇄물 바코드로 대체 가능	음성·점자 및 <u>이해하기 쉬운 영상</u> 형태의 인쇄물 바코드로 대체 가능
제출·발송 §65⑥	대통령 선거의 경우 점자형 선거공보 포함(의무)	대통령 선거의 경우 점자형· <u>발달장애인용</u> 선거공보 포함(의무)
장애인 조사 §65⑦	지자체장이 시각장애선거인 정보만 선관위에 통보	지자체장이 시각장애선거인· <u>발달장애선거인</u> 정보 통보
후보자 정보 공개 §65⑧	점자형 선거공보에 후보자 정보 게재(의무)	점자형· <u>발달장애인용</u> 선거공보에 후보자 정보 게재(의무)
저장매체 발송 §65⑪	디지털 파일로 전환한 저장매체에 점자형 선거공보 정보 발송	디지털 파일로 전환한 저장매체에 점자형· <u>발달장애인용</u> 선거정보 발송
저장매체 발송 §65⑫	점자형 선거공보의 규격·제출기한 위반 시 미접수	점자형· <u>발달장애인용</u> 선거공보의 규격·제출기한 위반 시 미접수
벌칙 §261	(신 설)	<u>발달장애인용 선거공보 미제출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u>

10) 경향신문(2024.3.12.), “공약집도, 용지도 어렵지만 투표할게요.. 생애 첫 투표 앞둔 발달장애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도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달장애인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권익옹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 역시 이러한 지원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음.¹¹⁾

다만,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개정안은 발달장애선거인을 위한 별도의 선거공보 및 선거공약서의 작성과 관련하여 재정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부담 주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¹²⁾

참고로, 예산정책처의 추계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선거공보 및 선거공약서 작성을 실시하는 경우, 추가 재정소요는 2026년 1억 2,900만원, 2030년 3억 7,5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5억 4,500만원(연평균 1억 900만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계됨.

1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이 장애로 인하여 차별을 받는 등 권리가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권익옹호에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12) 점자형 선거공보 및 선거공약서의 작성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함.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제3항제3호)

《 발달장애인을 위한 선거공보 작성 관련 추가 재정소요 》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지선)	2027	2028 (국선)	2029	2030 (대선·지선)	합계	연평균
발달장애인을 위한 선거공보 작성	123	-	41	-	334	498	100
발달장애인을 위한 선거공약서 작성	6	-	-	-	41	47	9

- 주: 1. 본 추계는 재정수반요인 중 추계가 가능한 재정수반요인에 한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이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됨
 2. 발달장애인을 위한 선거공보 및 선거공약서의 경우, 이해하기 쉽도록 면수를 2배 증가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
 3. 추계에 필요한 후보자 수 등은 직전 공직선거의 실적치와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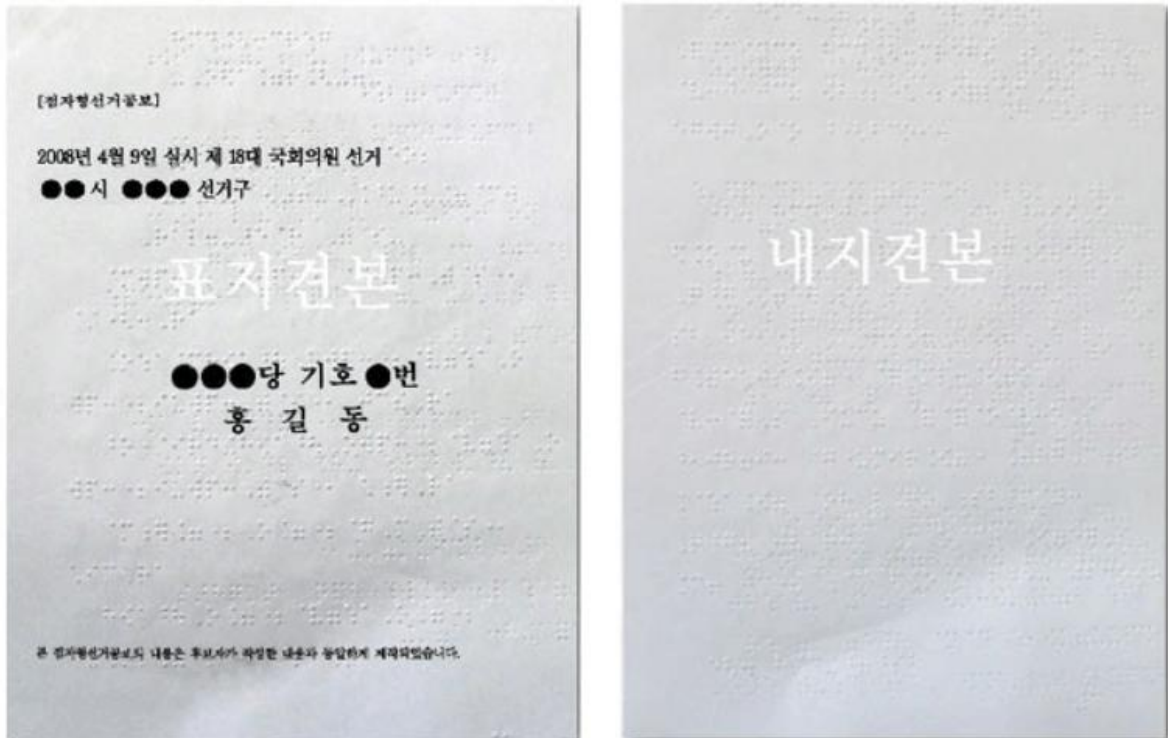
둘째, 현행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 및 선거공약서는 표시된 글자를 「한국점자 표기의 기본원칙」에 따라 일률적으로 작성하면 되는 데 반해, 발달장애인¹³⁾을 위한 선거공보의 작성방법에 관하여는 현재까지 명확한 작성지침 등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이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시점에서 실행 가능성 측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13)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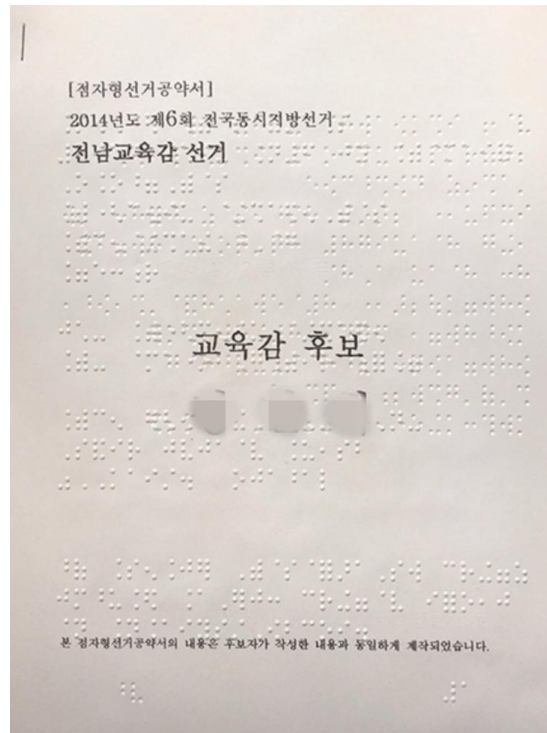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의 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장애인을 말한다.
 - 가. 지적장애인: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여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 나. 자폐성장애인: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다. 그 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점자형 선거공보 예시 》



《 점자형 선거공약서 예시 》



한편, 개정안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선거공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작성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현행법상 과태료 구간별 의무위반사항(법 제261조) 》

구분		의무위반사항(예시)
제1항	5천만원 이하	· 재산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선거인 등을 매수하거나 이해유도하는 것을 조건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금품등을 요구한 경우
제2항	3천만원 이하	· 시정명령·정정보도문의 게재명령을 통보받고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지 아니한 경우
제3항	1천만원 이하	· 고용주가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여 주지 않은 경우 ·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4항	5백만원 이하	·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소의 설치 관련 협조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제6항	3백만원 이하	· 방송광고, 방송연설 등과 관련된 규정을 위반한 경우 · 현행범인 또는 준형행범인으로서 동행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제7항	2백만원 이하	· 선거에 관해 현행법이 규정하는 신고, 제출 의무를 해태한 경우 · 투표용지모형을 훼손, 오손한 경우
제8항	1백만원 이하	· 참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참관을 거부하거나 게을리한 경우 · 여론조사 기관 변경등록 신청의무를 위반한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나, 국내의 경우 발달장애인을 위한 자료 제작과 관련한 연구가 매우 부족하고, 관련 연구기관이나 자료를 작성할 수 있는 업체 현황 파악도 어려운 점, 발달장애인 선거공보 등 작성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할 경우 새로운 재정부담이 발생하게 되고, (예비)후보자가 부담하게 할 경우 후보자 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의 기회 불균등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⑤ (생 략)

⑥ 선거공보의 제출과 발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대통령선거

가. 책자형 선거공보(점자형 선거공보를 포함한다)

후보자가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제51조에 따른 추가등록의 경우에는 추가등록마감일 후 2일)까지 배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당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확인하여 관할구역 안의 매세대에는 제출마감일 후 3일까지, 제5항에 따른 발송신청자에게는 선거일 전 10일까지 각각 우편으로 발송하고,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에게는 제154조에 따라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하는 때에 동봉하여 발송한다.

나. (생 략)

2. (생 략)

⑦ 구·시·군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시각장애선거인과 그 세대주의 성명·주소를 조사하여 선거기간개시일 전 20일까지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

장애인용 선거공보를 각각 대신할 수 있다.

⑤ (현행과 같음)

⑥ -----
-----.

1. -----

가. -----점자형 선거공보 및 발달장애인용 선거공보-----

-----.

나.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⑦ -----
-----시각장애선거인·발달장애선거인-----

여야 한다.

⑧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서 책자형 선거공보(점자형 선거공보를 포함한다)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내용(이하 이 조에서 “후보자정보공개자료”라 한다)을 그 둘째 면에 게재하여야 하며,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대하여 소명이 필요한 사항은 그 소명자료를 함께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둘째 면에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와 그 소명자료만을 게재하여야 하며, 점자형 선거공보에 게재하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내용은 책자형 선거공보에 게재하는 내용과 똑같아야 한다.

1. ~ 5. (생략)

⑨·⑩ (생략)

⑪ 후보자가 시각장애선거인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책자형 선거공보의 내용을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디지털 파일로 전환하여 저장한 저장매체를 책자형 선거공보(점자형 선거공보를 포함한다)와 같이 제출하는 경우 배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함께 발송하여야 한다.

-----.

⑧ -----

-----점자형 선거공보 및 발달장애인용 선거공보-----

-----.

-----.

1. ~ 5. (현행과 같음)

⑨·⑩ (현행과 같음)

⑪ -----

-----점자형 선거공보

및 발달장애인용 선거공보-----

-----.

⑫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 8항을 위반하여 책자형 선거공보 (점자형 선거공보는 제외한다. 이 하 이 항에서 같다)에 후보자정보 공개자료를 게재하지 아니하거나, 책자형 선거공보의 둘째 면이 아닌 다른 면(둘째 면이 부족하여 셋째 면에 연이어 게재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게재하거나, 그 둘째 면에 후보자정보 공개자료와 그 소명자료 외의 다른 내용을 게재하거나, 선거공보의 규격·제출기한을 위반한 때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⑬·⑭ (생략)

제66조(선거공약서) ① ~ ⑦ (생략)

⑧ 제64조제3항·제8항 및 제65조 제4항(단서는 제외한다)은 선거공약서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선거벽보” 또는 “책자형 선거공보”는 “선거공약서”로, “작성하여 보관 또는 제출할”은 “작성할”로, “점자형 선거공보”는 “점자형 선거공약서”로 보며, 점자형 선거공약서는 선거공약서와 같은 종류로 본다.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①

⑫ -----

-----점자형 선거공보 및 발달장애인용 선거공보-----

-----.

⑬·⑭ (현행과 같음)

제66조(선거공약서)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

-----“점자형 선거공보”는 “점자형 선거공약서”로, “발달장애인용 선거공보”는 “발달장애인용 선거공약서”로 보며 점자형 선거공약서와 발달장애인용 선거공보는-----
-----.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①

• 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략) <신설> 2. (생략) 3. 제65조제4항 단서를 위반하여 <u>점자형 선거공보</u>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 3의2. ~ 5. (생략) ④ ~ ⑫ (생략)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현행과 같음) 1의2. 제6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u>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u> 2. (현행과 같음) 3. ----- ---<u>점자형 선거공보 및 발달장애 인용 선거공보</u>----- 3의2. ~ 5. (현행과 같음) ④ ~ ⑫ (현행과 같음)
--	---

4. 교통약자의 투표소 및 사전투표소 접근 편의성 보장

개정안은 현재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위임되어 있는 교통약자를 위한 투표소 설치장소의 범위를 법률로 상향하는 한편, 해당 설치기준을 사전투표소까지 확대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第147條(投票所の設置) ① (생략) ② 투표소는 투표구안의 학교, 읍·면·동사무소 등 관공서, 공공기관·단체의 사무소, 주민회관 기타 선거인이 투표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한다. 다만, 당해 투표구안에 투표소를 설치할 적당한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인접한 다른 투표구안에 설치할 수 있다. ③ ~ ⑪ (생략)	제147조(투표소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 ----- ----- 편리한 곳으로서 승강기·경사로 등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 -----. ③ ~ ⑪ (현행과 같음)
제148조(사전투표소의 설치) ① ~ ③ (생략) ④ 사전투표소 설치 장소의 제한·사용협조, 설비, 사전투표사무원의 추천 협조 등에 관하여는 제147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10항 및 제11항을 준용한다. ⑤·⑥ (생략)	제148조(사전투표소의 설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제147조제2항부터----- -----. ⑤·⑥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투표소와 사전투표소의 설치를 구분하여 규정¹⁴⁾하는 한편, 투표소에 한하여 투표구안의 학교, 읍·면·동사무소 등 관공서, 공공기관·단체의 사무소 등 선거인이 투표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법 제147조제2항), 투표소의 설비,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교통약자와 격리자등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제반 시설의 설치, 적절한 투표소 위치 확보 등의 조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위임하고 있음(법 제147조제11항).

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은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위하여 1층 또는 승강기 등의 편의시설이 있는 곳에 투표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원활한 투표관리를 위하여 적절한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그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규칙 제67조의2).

2013년 재·보궐선거에서 사전투표가 도입된 이래 최근 사전투표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전투표소에도 고령자·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접근 편의시설 설치와 적절한 위치 선정 등 일반 투표소와 동일한 수준의 편의 조치가 요구되고 있음.¹⁵⁾

14) 「공직선거법」

제147조(투표소의 설치)

제148조(사전투표소의 설치)

15) “승강기 없는 3층에 사전투표소가… ‘소쿠리’ 선관위, 이동약자 배려도 부실”, 조선일보, 2022.4.9.

《 사전투표율의 변화 》

(단위: %)

제20대 국선	제19대 대선	제7회 지선	제21대 국선	제20대 대선	제8회 지선	제22대 국선
12.2	26.1	20.1	26.7	36.9	20.6	31.3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제22대 국회의원선거 총람)

《투표소 설치 관련 현행 법령 체계》

「공직선거법」

제147조(투표소의 설치) ②투표소는 투표구안의 학교, 읍·면·동사무소 등 관공서, 공공기관·단체의 사무소, 주민회관 기타 선거인이 투표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한다. 다만, 당해 투표구안에 투표소를 설치할 적당한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인접한 다른 투표구안에 설치할 수 있다.

⑪ 투표소의 설비,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제반 시설의 설치, 적절한 투표소 위치 확보 등의 조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67조의2(투표소의 설치 및 설비) ① 투표소는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이동약자(이하 이 조에서 “이동약자”라 한다)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위하여 1층 또는 승강기 등의 편의시설이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원활한 투표관리를 위하여 적절한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 - 투표소 설치장소 선정기준

- 투표구안의 생활 중심지로 선거인이 잘 알고 있고 교통이 편리한 곳
- 투표하기 편리하고 투표관리를 원활히 할 수 있는 적정면적 규모의 장소
- 장애인 등의 투표편의 시설이 있는 다음의 장소
 - 투표소는 1층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1층 투표소가 없는 경우에는 승강기 등 장애인 편의시설이 있는 곳
 - 장애인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임시경사로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곳

지난 22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투표소 및 사전투표소의 설치 층수별 현황을 보면 설치장소가 1층이 아닌 지하나 지상 2층 이상에 설치된 투표소 및 사전투표소는 각각 2,915개소(20.4%), 1,890개소(53.0%)였으며, 이 중 투표소는 5.9%인 170개소, 사전투표소는 5.5%인 197개소에 승강기등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장애인이나 고령자 및 임산부가 제3자의 도움 없이는 투표하기 어려운 여건이었던 것으로 보임.¹⁶⁾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소 및 사전투표소 설치 층수별 현황》

(단위: 개)

구분		지하	1층	2층	3층이상	승강기등 편의시설 설치된 투표수 (1층 제외)
투표소	14,259	425 (3.0%)	11,344 (79.6%)	1,501 (10.5%)	989 (6.9%)	2,745 (94.1%)
사전투표소	3,565	104 (2.9%)	1,675 (47.0%)	905 (25.4%)	881 (24.7%)	3,368 (94.5%)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제22대 국회의원선거 총람)

이에 개정안은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투표소 및 사전투표소를 승강기 및 경사로 등의 편의시설이 있는 곳에 설치할 수 있도록 법률로 상향하여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교통약자 등의 선거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16)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승강기등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사전)투표소의 경우 고령자·장애인 등 선거인이 요구할 경우 1층 또는 투표소 출입구에 별도의 임시기표소를 설치하여 투표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였다는 입장임.

다만, 법률로 투표소 및 사전투표소를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한 승강기 및 경사로 등의 편의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정할 경우 모든 지역에서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투표소 및 사전투표소를 확보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이와 같은 현실적 문제점을 고려하여 「공직선거관리규칙」에는 투표소를 편의시설이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적절한 장소가 없는 경우 예외로 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사전투표소의 경우에도 교통약자 등의 사전투표소 접근 편의성을 보장하기 위한 유사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규칙의 개정이 시급할 것으로 보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교통약자의 투표 편의를 제고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동의하나, 투표구마다 지리적·환경적 여건이 다양하므로 투표소 장소를 승강기 및 경사로 등 편의시설을 구비한 시설로 한정할 경우 투표장소 설비에 필요한 적정 넓이의 공간 부족 등으로 장소 확보에 한계가 있는 점, 공공기관 또는 민간시설 등에서 투표소 장소 협조가 원활하지 않는 점 등으로 장소 확보가 제한될 뿐만 아니라, 일부 지역의 경우 편의시설이 설치된 장소가 외곽에 있어 선거인의 접근성이 저하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임.

5. 투표용지에 소속정당을 상징하는 마크·심벌 및 후보자 사진 게재 등

개정안은 일반(비장애이용) 투표용지에도 소속정당을 상징하는 마크나 심벌의 표시와 후보자의 사진을 게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시각장애인을 위한 특수투표용지 또는 투표보조용구의 제작·사용을 의무화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第150條(投票用紙의 政黨・候補者の 掲載順位 등) ① 投票用紙에는 候補者の 記號・政黨推薦候補者の 所屬政黨名 및 姓名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無所屬候補者は 候補者の 政黨推薦候補者の 所屬政黨名の 欄에 “無所屬”으로 표시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기호와 정당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 ⑩ (생략)	제150조(투표용지의 정당·후보자의 게재순위 등) ① -----소속 정당명(소속정당을 상징하는 마크나 심벌의 표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성명 및 사진-----. ② ~ ⑩ (현행과 같음)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① ~ ⑦ (생략) ⑧ 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는 視覺障礙로 인하여 자신이 記票를 할 수 없는 選舉人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中央選舉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 바에 따라 特殊投票用紙 또는 投票補助用具를 제작・사용할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시각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를 할 수 없는 선거인을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투표용지 또는 투표보조용구를 제작・사용하여야 한다.

수 있다. <신 설> ⑨ (생 략)	⑨ <u>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와 그 소속정당을 식별하기 어려운 선거인의 투표를 보조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보자의 사진 또는 정당마크가 표시된 투표보조용구를 제작·사용하여야 한다.</u> ⑩ (현행 제9항과 같음)
--	---

먼저, 일반(비장애이용) 투표용지에 소속정당을 상징하는 마크·심벌 및 후보자의 사진을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과 관련하여,

현행법은 일반(비장애이용)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 정당추천 후보자의 소속정당명 및 성명을 문자만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시각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 등이 아닌 비장애인 중에서도 정당 및 후보자를 쉽게 식별하지 못하는 고령층이나 장애인의 범주에는 포함되지는 않지만 다소 낮은 문해력을 가진 유권자가 존재할 수 있으며, 이들 역시 문자 중심의 정보만으로는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 및 후보자를 정확히 식별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이들의 실질적인 투표권 행사가 제약될 우려가 있을 수 있음.

이에 개정안은 기존 문자 중심의 투표용지에 소속정당을 상징하는 마크·심벌 및 후보자의 사진을 동시에 기재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유권자의 선거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다만, 그림투표용지 도입으로 인지도가 높은 후보자가 유리할 수 있어 후보자 간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및 새로운 투표용지 제작으로 인한 행정적 부담과 추가 예산 소요 등 현실적 여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에 정당 마크 및 후보자의 사진을 표시하는 것은 사진 표시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여부, 투표용지 작성비용 증가에 따른 예산 소요, 투표용지 길이 증가에 따른 개표시간 연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임.

참고로, 외국 사례를 보면 투표용지에 후보자 사진을 포함시키는 국가로 아일랜드가 있으며 정당로고를 포함시키는 국가로 영국, 미국, 프랑스, 포르투갈, 리투아니아 등이 있음.

《후보자 사진, 정당로고가 포함된 외국투표용지》

유형	국 가 명
후보자 사진	아일랜드
정당로고	영국, 미국, 프랑스, 스페인, 칠레,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리투아니아, 멕시코,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튀르키예

《후보자 사진, 정당로고 투표용지 포함여부 해외사례》

[illegible]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다음,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특수투표용지 또는 투표보조용구의 제작 및 사용을 의무화하고, 후보자 및 소속정당을 식별하기 어려운 선거인을 위해 후보자의 사진 또는 정당마크가 표시된 투표보조용구를 제작 및 사용하는 내용과 관련하여,

현행법은 시각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을 위하여 「공직선거관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투표용지 또는 투표보조용구의 제작·사용을 임의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의무화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선거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다만, 시각장애인 및 발달장애인의 투표보조용구 제작·사용을 의무화할 경우 투표 편의를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종류 및 지역마다 입후보한 정당·후보자가 달라 별도의 보조용구를 제작해야 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전국 동일 선거구인 대통령선거를 제외한 선거에서는 관외선거인에게 투표보조용구 제공이 어려운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심사시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문 의 처
02)6788-5336